구매업무규정

□ 제정 : 1999. 10. 1.
□ 개정 : 2006. 4. 1.
□ 개정 : 2007. 11. 1.
□ 개정 : 2014. 6. 25.
□ 개정 : 2017. 8. 31.
□ 개정 : 2018. 8. 31.
□ 개정 : 2023. 6.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물품구매, 제작, 수리, 및 시설 공사의 발주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라 함은 물품구입과 시설공사 발주를 총칭한다.
2. "물품"이라 함은 원자재, 기자재, 가공품, 소모품, 각종 인쇄물, 용역 등 내.외자로 구매하는 제품을 총칭한다.
3. "시설공사"라 함은 본교에서 시행하는 전기, 설비, 건축, 토목 등의 공사와 제반 보수공사를 총칭한다.
4.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가격을 조사하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격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라 함은 총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모든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구입 및 시설공사 발주행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담당부서) 본교에서 행하는 모든 구매행위는 업무팀에서 담당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 수요 부서의 장이 수요물품을 직접 구매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때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구매하는 경우
2. 소량 소액 구매물품 또는 집중구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써 구매부서의 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요물품을 직접 구매하도록 한 경우
3. 수요물품의 특성, 수요시기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서 구매하는 것이 현저히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구매 부서의 장이 수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한 경우

4. 특별회계에서 구매하는 경우

제2장 구매방법 및 절차

제5조(구매신청) 물품의 구입이 필요한 수요부서는 필요한 물품의 종류에 따라 구매요구 품의서에 구매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업무팀에 제출한다.

제6조(구매방법) 구매요청을 받은 업무팀은 적절한 구매방법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경쟁입찰, 수의계약 또는 단가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단 구입금액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은 업무팀 전결사항에 따른다.

제7조(가격사정) 구매결재를 받은 구매 건 중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4억원 초과, 전문공사 2억원 초과, 전기·통신·소방공사 1억6천만원 초과 또는 2천만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총장에게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 가격사정을 받아 입찰에 의해야 한다.

제8조(검수요청) 계약자가 물품을 납품할 경우 신청부서의 검수담당자가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신청부서의 장에게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검수가 완료된 후 납품업체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청구를 받은 이후라도 계약에 위배되거나 사용도중 문제점이 발견되는 등 수요자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대가지급을 유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선급금) ① 업무팀은 구매업무시 시급을 요하거나 현금거래를 요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리팀으로부터 선급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집행한 선급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처리 즉시 빠른 시일 안에 증빙서류를 첨부 경리팀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3장 계 약

제11조(계약방법) ①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1억6천만원 미만 또는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는 복수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한다.

②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4억원 초과, 전문공사 2억원 초과,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1억6천만원 초과 또는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한다.

제12조(경쟁입찰)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입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써 이를 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설비, 자재 등을 보유하거나 실적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입찰대상자가 1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써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써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써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7.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제13조(응찰서류)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국세.시세완납증명서, 자격증사본, 위임장 등을 제출 받아야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으로 현금 또는 시중은행의 보증수표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도록 한다.

제14조(낙찰자 결정) ① 개찰은 입찰장소에서 입찰자의 면전에서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수의계약)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명인뿐인 경우로써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써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4. 조달청 조달품목을 구매하는 경우
5. 단가계약이 체결된 소모품류
6.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써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구매와 용역계약 또는 5,000만원 이하인 공사계약(단, 물품구매 또는 용역계약으로 시행령 제 26조 1항 5호에서 정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등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까지 가능)

②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단가계약)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구매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조달시간을 단축하고 규격과 품질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단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서 작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이 성립된 후 지체없이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소정의 계약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쌍방이 계약서에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8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경매에 부치는 경우
2.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 할 경우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4.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1주일 이내에 물품의 납품이 조기 가능한 경우

제19조(계약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으로 현금 또는 시중은행의 보증수표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도록 한다.

제20조(하자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하자담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하자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 또는 공사에 대한 완성분으로써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설공사_1,000분의0.5

② 물품의 제조 및 구매 1,000분의 0.75

③ 물품의 수리·용역(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000분의 1.25

제22조(보증금귀속 및 계약의 해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③ (폐기)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구매업무 처리규정은 폐기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